

[제1호 서식]

(동작구 사당동 316-177 일대)

정 비 예 정 구 역 해 제 신 청 서

사 업 시 행 구 역	위 치	동작구 사당동 316-177번지 일대		구역면적	42,000(m ²)
	토지등 소유자	249명	조사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를		-
	정비 예정구역 지정일	2006. 3.23(제2006-95호)			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
구역의 해제를 신청합니다.

2015년 6월 일
신청자 동작구청장 (직인)

서울특별시장 귀하

구비서류 1. 사당동 316-177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서

사당동 316-177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서

■ 사업개요

- 위치 및 면적 : 동작구 사당동 316-177번지 일대(4.2ha)
- 토지등소유자수 : 249명
- 추진위원회 구성여부 : 미구성

■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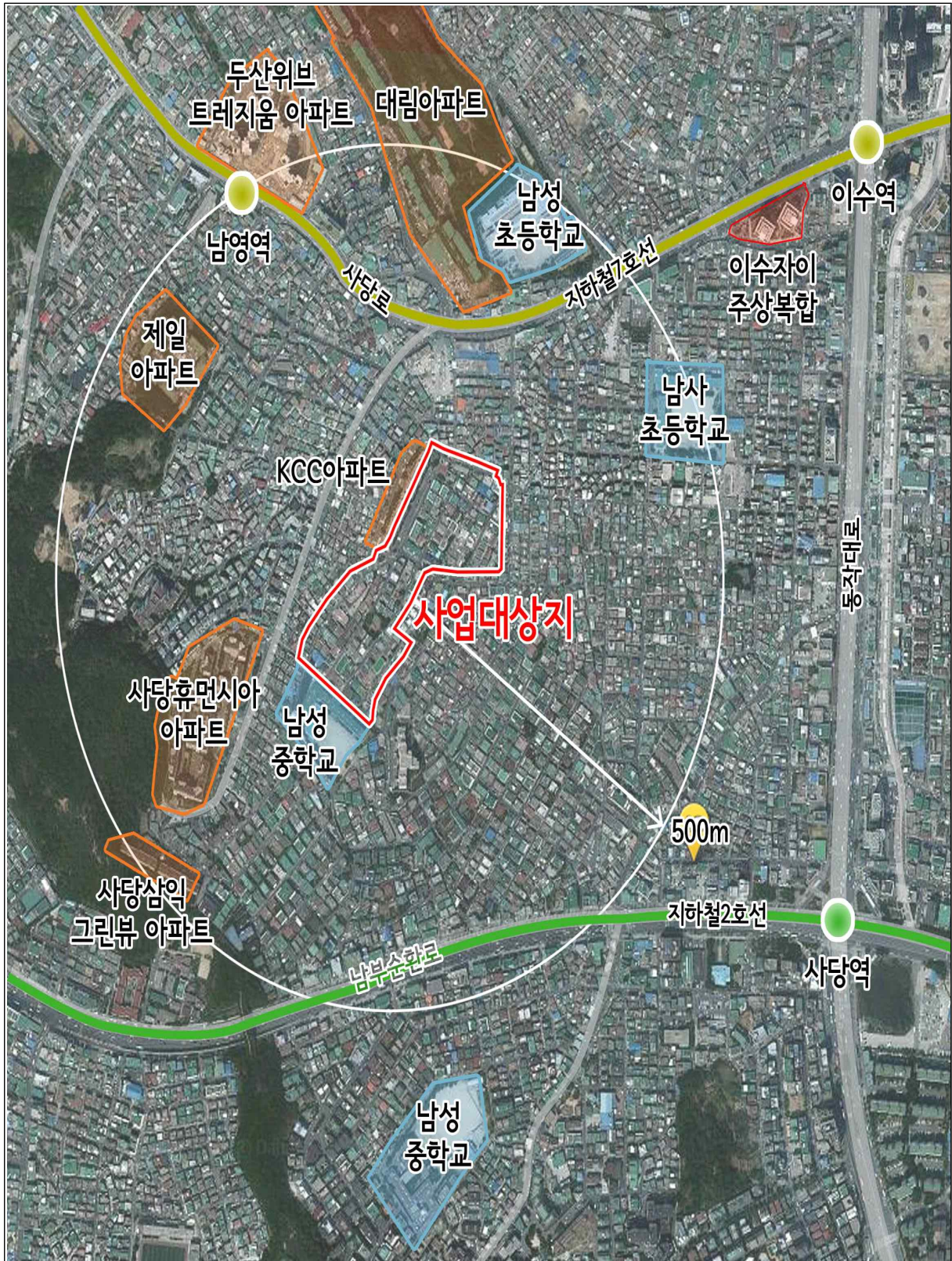
- 2006.03.23 : 정비예정구역 지정 (제2006-95호)
- 2012.02.01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- 일몰제 시행
- 2013.05.02 :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 구역 현황 제출
정비구역 요건 미충족 (노후도 51%, 요건충족시기 : 2019. 8.)
- 2015.03.19 ~ 04.17 : 정비예정구역 해제 주민공람 (제출의견 : 없음)
- 2015.05.08 :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 (제252회 임시회)
- 의견서 채택 : 원안대로 해제하는 것에 동의

■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자 : 동작구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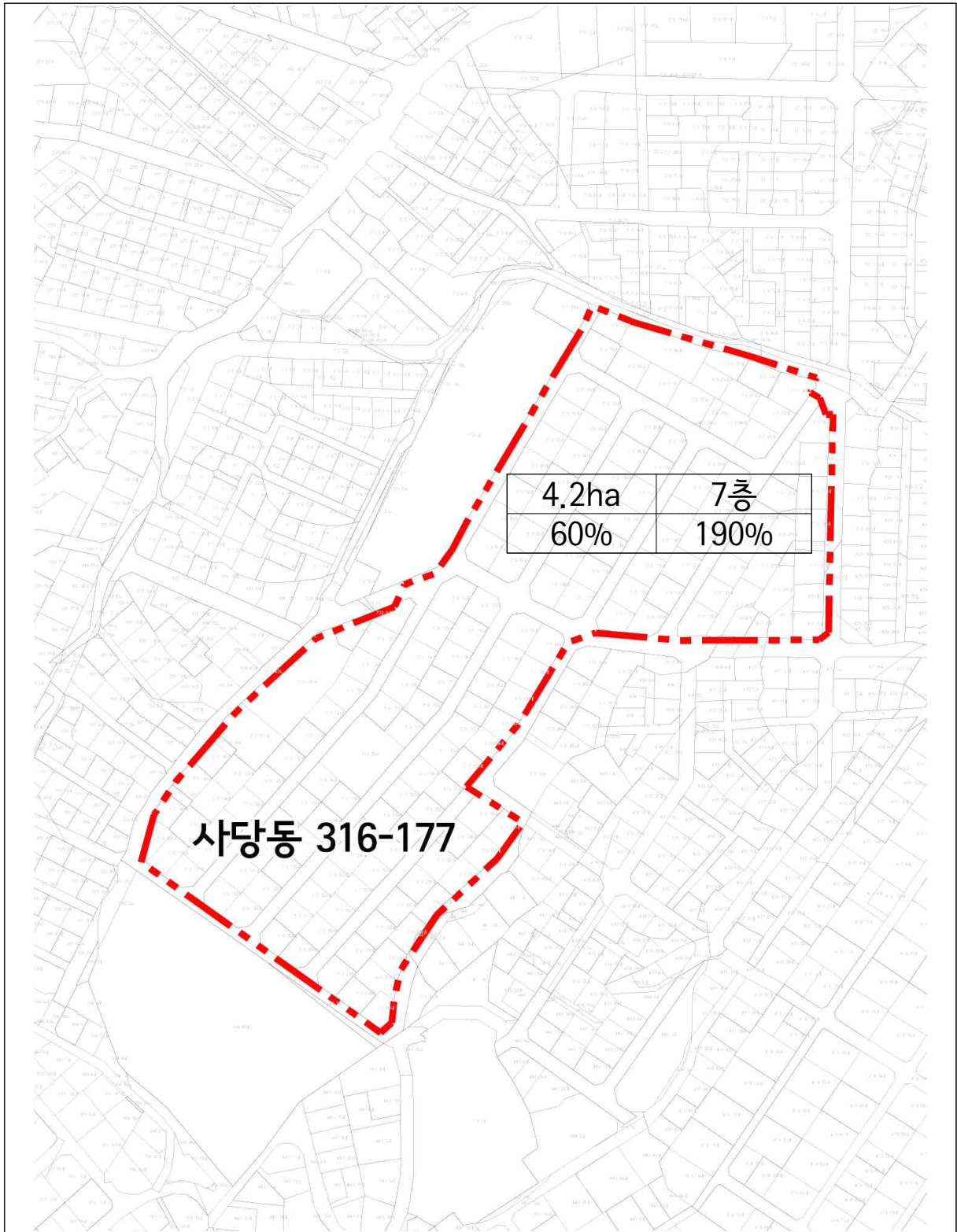
■ 관할구청장 최종 검토의견

-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(2012. 2. 1)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,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, 서울특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함 [강행규정]
- 특히, 사당동 316-177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요건(노후도) 미충족(충족시기: 2019. 8)하며 해당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개발의지 미미하고, 기반시설이 대체로 양호하여 개별건축이 가능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(정비구역 등 해제)에 따라 해제 요청

정비에정구역 위치도



 정비예정구역도



정비에정구역 현황 사진

